

##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및 검정업무규정 제정

### 제정사유

2006. 4. 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안전검사와 검정업무를 대행 받아 수행함에 동업무의 신청 · 접수 · 증서교부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.

### 검사업무규정의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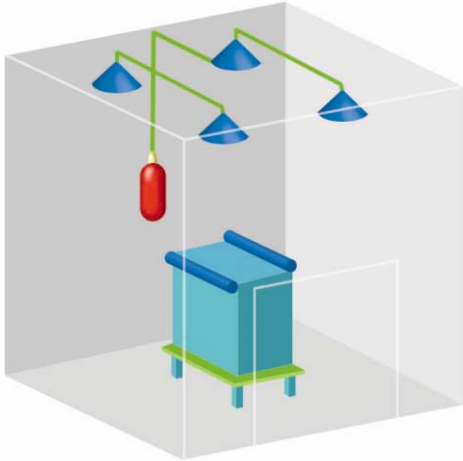
- 안전검사 신청 및 검사보고서 작성 등 전산시스템 활용
  - 안전검사신청, 접수, 검사보고서작성, 안전검사증 교부 또는 재교부 등 각종 서식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의 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처리함
- 신규검사 신청 · 접수 방법
  -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(2006. 4. 1)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모든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신규검사로 신청을 받아 접수하며 신청서식은 개인 또는 사업자에 관계없이 “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(개인용)”로 접수함
  - 신규검사 이후 정기검사부터는 개인용 레저기구는 개인용신청서를, 사업자용은 사업자용신청서를 접수 함
-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집행
  -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사업자 레저기구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및 임시검사는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신규검사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우 리협회 등에서 실시함

### 검정업무규정 주요내용

- 검정 신청 및 검정보고서 작성 등 전산시스템 활용
  - 검정신청 · 접수 · 보고서작성 및 검정합격증명서 등 이 규정의 업무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서식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하여는 검사협회의 “선박검사시스템”에 따라 처리함
- 검정합격증명서 및 견명서 교부
  - 검정합격증명서 교부시 수상레저기구 견명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교부하며 레저기구에는 별도의 검정합격 증 인표시는 하지 아니함



### 소형선박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기 설치



-소형선박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기 모형도-

#### - 소형설비기준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설치

해양수산부는 연안을 운항하는 유람선, 낚시어선 등 소형 선박의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상주할 수 없는 무인기관실에 자동확산형 소화장치를 올 하반기부터 새로 건조한 선박에 설치할 계획이다.

소형선박의 기관실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고온이 발생해 운항중에는 사람이 상주할 수 없어 무인상태로 운항하게 됨에 따라 화재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. 또한 휴대용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화재감지 및 초기진화의 실패로

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다. 이에 따라 해양부는 2005년 말 무인기관실용 자동확산형 소화장치를 개발해 실용화 한 바 있으며, 제품의 사양, 성능기준 등을 반영한 소방설비기준 개정안을 다음주에는 한국해운조합, 수협 등 관련 업 ·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.

해양부는 이 장치의 설치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소형선박의 화재사고가 현격히 줄어들어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편 지난해에는 총 658건의 해양사고 중 화재사고는 71건이 발생해 1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어선 화재사고는 62건(87%)으로 화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- 문의: 해사기술담당관 박영선, 사무관 심성태 02-3674-6325

